

조 점 기 획

I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환경의 동향과 대응

목 차

- I. 서론
- II. 지적재산권 보호법위의 확장
- III. WTO시대 지적재산권 보호환경과 과제
- IV. 대응방안
- V. 맺는말

朴東炫

기술전략팀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I. 서론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최근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구조와 기술혁신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 구조와 국제무역 비교우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 대부터 세계 경제계에 일어난 변화인 경제의 소프트(soft)化의 급격한 진전되면서 경쟁의 수단이 하드웨어(hardware)에서 소프트웨어(software)로 바뀌어졌다. 형체를 갖는 제품중심에서 無形의 지식정보 서비스중심으로 그 산업대상이 옮겨가는 산업의 서비스化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知的財産이 더욱 중요한 국제 교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商品交易에서는 比較優位에 근거하여 후진국과 선진국이 각각 特化商品이 있으며, 교역에 의하여 관련된 모든 국가의 복지가 증진된다. 그러나, 知的財産을 대상으로 하는 技術貿易에서는 비교우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진국은 기술수출국, 후진국은 기술수입국으로 확연히 구별되어 富益富貧益貧추세가 가열될 수 밖에 없다. 따

라서, 후발자들은 선진국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 온 기술자산의 모방적 이용으로 무임승차(free riding)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기술격차의 해소(catch-up)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술개발의 노력을 보상받고 두뇌노동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발기업체는 연구개발투자의 회수가 불확실해진다. 위험부담이 크므로 자연히 연구개발투자가 망설여지는 사태도 생기고, 기술의 진보도 그 만큼 늦어진다. 따라서 무임승차를 막고 새로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의 투자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知的財産權의 보호를 강화하여야겠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다. 그 근원지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다.

점차 누적되어 가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는 1980년대 후반의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맞물리면서 국제질서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쉽마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결국 미국, 좀 더 확장하여 선진국들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선진국과 중·후진국간의 대립에서 찾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 기술환경의 초점도 선진국과 중후진국사이의 경쟁력의 근원 요소의 분석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세계 경제의 발전에는 두뇌부문이 만들어 내는 기술진보가 필요하다. 이 두뇌부문에 투자되는 비용이 세계시장에서 부가가치 안에서 배분되어야 세계경제의 정상적 발전이 가능하다. 知的財産權의 보호강화는 세계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보았을 때의 제조업 부가가치 배분구조의

재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종래 다른 협상의 의제로 등장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의제로 제기되어 그 결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상(Uruguay Round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R/TRIPs)이 타결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UR/TRIPs를 포함한 최근 지적재산권의 보호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지적재산들의 보호와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있어 어떤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하는가를 정리하였다.

Ⅱ. 知的財産權 보호범위의 확장

새로운 지적산물이 출현했을 때, 이를 어떤 수단에 의해 보호할 것인가, 또 이 새로운 지적산물은 기존 보호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보호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이는 새로운 지적재산이 특허성(patentability)과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의 기준을 충족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특허성의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 상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규정을 제한하여 특허성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상의 제2조 1항 1호에서 발명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다음 제 5조에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9조의 특허요건에서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

신규한 것일 것, 그리고 기술적 진보성이 존재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의 '기술'은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기술인 "학문, 이론을 응용하는 포괄적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며, 사상이란 '생각, 의견 또는 통일된 판단체계'를 뜻한다. 또한 창작이라는 규정으로서 단순한 발견은 특허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저작물성의 기준, 즉 어떤 것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 하는 저작물의 개념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저작권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오늘날 까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입법례는 저작물의 정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저작물을 예시한 후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이라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저작물의 범위가 날로 확장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에 대하여 예시적 열거(저작권법 제4조 1호-9조) 한 후에 저작물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물의 정의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창작물은 창작성을 가지고 있음을 요구하는 데 이 창작성은 극히 상대적 개념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의거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것이면 창작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특허성에서 요구하는 신규성이 없어도, 즉 매우 유사한 저작물이 이미 존재하여도, 극단적인 경우 똑같은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도 타인의 것을 베낀 것만 아니면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진보성 면에서도 표현물의 학문적 가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지적재산이 특허성 혹은 저작물

성을 지니고 있다면 기존의 보호체제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과 저작권이라는 보호장치 이 두가지 만으로는 보호가 불충분할 수 있다. 새로운 지적재산의 출현은 그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속도를 항상 앞질러 갈 수 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기존 기술의 개량 속도도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빨리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재산의 출현 속도도 빨라졌고 기존의 특허성과 저작물성의 해석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발명의 특허 요건 및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점점 포괄적으로 확장되어 극단적으로는 발명의 특허성 여부의 논의에 있어 Chakrabarty판례 이후 특허보호가 가능한 법적특허대상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아래 모든 것(anything under the sun made by man) 으로 판단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허성과 저작물성의 확대 해석에 의한 보호체계의 외연은 결국 한계를 이룰 수 밖에는 없다. 종래의 전통적인 특허성과 저작물성의 외연의 확대만으로는 보호체제가 부적절할 때 즉,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거나 양쪽에 공통으로 속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 새로운 지적재산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주어지는 명령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 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물은 아니고 논리법칙을 이용한 명령의 집합체였기 때문에 앞서 말한 특허성과 저작물성의 수용체계에 적합하지 않다. 반도체 chip의 회로배치 또한 회로의 배선배치상태 자체의 창작성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이것 역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물은 아니었고, 이후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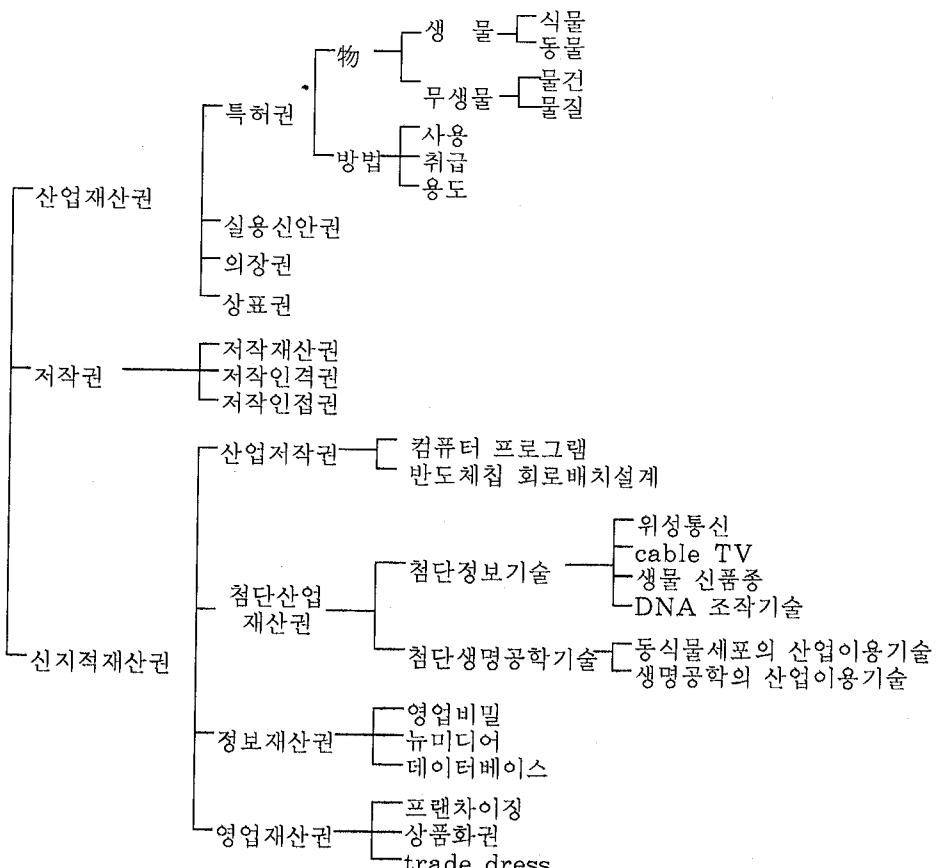
첨단 생명공학기술 등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한 정보기술자산이 속속 출현하였고, 전통적 知的財產權에 의한 보호로는 불충분한 것이 많았고, 별도로 보호방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權』이란 단어로 총칭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신지적재산권이란 명칭이 어색하지 않게 쓰이게 된 것이다.

新知的財產權을 독립된 권리의 보호체계로서 일괄하여 『權』이란 용어로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產業

財產權과 著作權적인 보호체계의 적용이 어렵거나 보호가 미진할 수 있는 새로이 출현한 기술들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다. 즉, 종래의 전통적인 產業財產權과 著作權의 단독 혹은 보완 및 중첩적인 보호체계에 의해서 실체적 요건이 만족되지 않거나, 절차상의 난점이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 보호가 고려되어 최근 일련의 법제화 과정을 겪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회로배치설계 등의 신기술자산들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분야의 知的財產들을 그 성격에

<그림 1> 知的財產權의 분류체계



따라 대별하여 체계화시키면 크게 産業財產權과 著作權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적 저작권(industrial copyright)과 첨단생명공학기술 및 첨단정보기술에서 창출된 신기술들, 영업비밀(trade secret)을 포함하여 생산·제조·기획·영업 등에서 창출되는 각종 財產的情報(proprietary information)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대별한 권리들을 굳이 권리로서 명명하자면 흔히 産業著作權, 尖端産業財產權, 情報財產權으로 명명하여 부를 수 있다. 이외에 franchising, 상품화권(character), trade dress 등도 새로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新知的財產權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그림 1>에 知的財產權의 분류체계를 나타내었다.

Ⅲ. WTO시대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과 과제

UR/TRIPs 최종 협정문 제10조1)에 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는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며, 데이터베이스도 일반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특별법2)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이후 침해에 대한 벌칙의 수준이 낮아 침해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심해지자 1994년 동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UR/TRIPs 협정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 산업저작권으로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역에서는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또한 死亡時 起算主義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 뿐만 아니라 발생년도말 부터 50년간 또는 완성년도 부터 50년내에 실행되지 않은 경우는 완성년도말 부터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의미하게 되며, 현재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보건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법은 프로그램저작권을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5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UR/TRIPs 최종 협정문제 35조-38조에서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신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칩을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한 최초의 입법은 1984년 미국의 반도체칩 보호법이다. 1985년에는 국제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WIPO 주관하에 시작되었다. 이후 4회의 정부전문가 회의(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를 거쳐 1989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린 '집적회로 보호조약'을 위한 외교회의'의 결과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보호조약(the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 IPIC, 일명 워싱턴 조약)이 채택되었다. UR/TRIPs 협정에서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해 기존의 협약인 IPIC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워싱턴조약 플러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약에서 정의한 집적회로3)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능동소자를 포함한 두개 이상의 회로소자와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

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IPIC에서는 권리자의 권리범위를 1)복제권, 2) 상업적인 수입, 판매 및 배포권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복제권과 상업적인 수입, 판매 및 배포권 이외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⁴⁾. UR/TRIPs에서는 IPIC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었지만 조금 더 강화된 형태의 보호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배치설계에 관하여 집적회로를 사용한 제품불법복제 배치설계를 내장하고 있는 한, 상업적인 수입, 판매 및 배포의 권리를 권리자에게 부여한 것이다⁵⁾. 이는 위상턴조약이 집적회로와 배치설계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집적회로가 들어있는 제품을 명시하지 않아 해석상 의문이 있던 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UR/TRIPs 최종 협정문 제39조⁶⁾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를 위하여 영업비밀 및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호한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전체 혹은 구성요소로서 비밀성을 지녀야 하고, 상업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며,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규정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92년 12월 시행)의 일부로 되어 있다.

정부가 신규의약품 또는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농약품의 제조허가요건으로 독성, 안정성 검사 등 임상실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그와 같은 자료를 부정한 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보호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신약

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보통 12년의 시간과 1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 중 900억 원과 10년정도의 시간이 정부제출임상시험자료의 작성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신규 의약품은 당국의 발매허가를 얻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시험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선발기업들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후발기업들과의 경쟁을 피해야만 한다. 그러나 후발기업들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끝날 시점에 맞춰 새로운 공정으로 저가의 제품을 준비한다. 임상시험자료는 선발자의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물질특허기간이 만료된 제네릭 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이 작성한 자료를 참조하여 발매 허가를 주어 왔다. 이제는 제네릭 약품의 발매에도 독자적 임상시험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UR/TRIPs 최종 협정문에서 나타난 첨단산업재산권에 관한 부분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특허제외대상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협정문에서는 자국 영토내에서 당해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1)공공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2) 도덕성에 위배되는 경우, 3)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자연이나 환경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5)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수술방법, 6)미생물을 제외한 생물 또는 동물, 7)동식물의 생산에 대한 생물학적인 방법(비생물학적인 방법이나 미생물에 의한 방법은 제외)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최종협정문 제

27조 제3항 b)⁷⁾ 에서는 특허 또는 효율적인 별개의 제도를 통하여 또는 양 제도 모두를 설치함으로써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WTO협정 발효후 4년 후인 1999년에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성변식에 의한 신품종 식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호 방법으로서 육종법의 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또한 조약안 제27조⁸⁾에 의하면 특허의 권리향유에 대해서 무차별의 조항이 채택되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장소, 기술의 분야 및 제품들이 수입되는지 또는 국내 생산되는 지에 관하여 차별없이 특허들이 하여 가능해야 하고 특허권들이 향유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에서의 발명들은 발명시점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미국의 현행 특허법상에서 외국인의 발명에 대해 출원시점을 발명시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선출원주의 국가의 기업들은 발명시점을 실제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언뜻 보기에는 이와 같은 무차별 조항의 채택으로 인하여 우리기업들의 대미 기술경쟁에서의 호기로 볼 수도 있으나 이면에는 더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선출원주의 국가들의 발명에 대해서도 발명시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전략으로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미국 정부의 행태에 비추어 선발명주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기업체들로 하여금 WTO 국가 내에서의 발명행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고무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향후 미국 시장에서 선출원주의 국가와의 분쟁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선발명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므로 발명행위의 입증은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다.

IV. 대응 방안

지금까지 知的財産權과 관련된 국제동향, 법제화 과정 및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향후 知的財産權 보호제도 발전과정에서 예측되는 논의들을 제시하였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세계는 침단기술을 무기로 하는 소위 技術帝國主義의 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각국은 이러한 新世界秩序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技術開發을 최우선 국가목표로 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개발된 기술의 독점적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知的財産權, 특히 新知的財産權의 保護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新知的財産權의 충격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新知的財産權 분야에서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행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知的財産들은 속속 등장하게 될 것이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증가함에 발맞추어 새로운 知的財産의 등장속도도 점점 빨라질 것이다. 新知的財産權의 위력이 점점 더 강성해 질 21세기를 대비하여 전반적 제도 정비와 함께 기술력을 배양해 가야 할 것이다.

1. 총체적 知的財產체제 효율성의 확보

우리의 대응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가 혁신체제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의 총체적 知的財產체제(tot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명칭 대신 체제로 명명한 것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기술의 확산, 기술혁신 유인제도 등 지적재산의 창출권리화 보호 실시 등의 전반적인 지적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의 총체적이며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동태적 특성을 지닌 구조로서의 國家革新體制(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의 일부로서의 지적재산 관련 제도를 의미하고자 함이다.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의 설명은 체제(system) 혹은 네트워크(network)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우선 네트워크란 주체간에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구축된 일련의 조직형태를 의미하며, 체제란 다수의 네트워크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반 상호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구조를 의미한다. 체제나 네트워크의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기업경쟁력, 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들의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비가격요인인 국민경제 전반의 제도적 특성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면서 OECD, MIT생산성위원회, Michael Porter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국민경제의 제도들의 구조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사실들이 발견되었고, OECD는 국가경쟁력의 이러한 측면들을 개념

화하여 구조적 경쟁력(structural competitiveness)'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후 구조적 경쟁력의 개념은 미시경제의 차원에 도입되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비가격요인들에 국민경제의 제도적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장시켰으며 이로 인해 기업 내부의 제도적 측면만이 아니라 타기업이나, 대학, 정부,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들 및 국내 경제 환경이 기업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술혁신체제란 광의의 기술혁신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신기술을 창출하거나 도입하고, 이를 개량시키고 확산시키는 네트워크(network)로 정의할 수 있다.

지적재산체제도 이와 같은 국가혁신체제의 틀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산업의 흐름과 발전방향에 보조를 맞추어 그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견실하게 하는데 있어 국가혁신체제의 개별 구성요소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인식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산업의 발전방향에 공명하고 각 네트워크의 구성인자 및 네트워크간의 조율을 위하여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국가혁신체제가 개편되어야 한다. 총체적 知的財產체제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균형을 이루어 그 대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첫째로 기술혁신능력의 강화이다. 기술혁신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력과 투자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량의 체제구축이 최우선 과제임은 물론이다. 둘째는 知的財產權 정보력의 확보이다. 신속·정확한 知的財產權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셋

째로는 권리화 마인드의 함양이다. 개발한 기술은 권리화과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해서 기술개발 초기부터 知的財產權 확보로의 방향이 조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법적 경쟁력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기업마다 특허전문가를 확보하고, 국가차원 및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국제 知的財產權 분쟁 대응체제의 구축하여 국제 知的財產權 분쟁에서의 대항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特許 專擔部署를 기업의 최고 스텝으로 두어 기술개발의 시작과 생산전반의 최종 타당성을 지적재산권 본부장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권리 저촉시 적은 로열티로 라이선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으로 知的財產權을 중요시하고 존중하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新知的財產權 분야의 첨단기술은 지적재산권의 완벽한 보호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혁신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외국기술의 이전 역시 고급기술에 있어서는 그 보호가 철저히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개개가 모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들 구성요소들이 서로 원활한 관계 하에 知的財產權의 창출과 관리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 시켜 국가혁신체제(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내에 수용되는 것이 총체적 知的財產權 체제 효율성의 확보라 할 수 있다.

2. 분쟁대응능력의 강화

지적재산은 보편성을 띤 무형의 산물이 많고, 수명주기가 짧고,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산물이 많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타인 침해의 감지와 분쟁의 예방과 대응 등의 법적 경쟁력의 강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UR/TRIPs 협정문 제27조에는 특허의 권리향유에 대해서 무차별의 조항이 채택되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장소, 기술의 분야 및 제품들이 수입되든지 또는 국내 생산되든지 차별없이 특허들이 許與 가능해야 하고 특허권이 享有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선출원주의 국가들의 발명에 대해서도 발명시점 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전략으로 취하여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국제적 분쟁의 다발이 우려되므로 대미 법적 대응능력의 보유를 위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각 기술개발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주체들에 있어서는 발명의 先後關係 증명과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의 표준화와 규범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응한 체제의 정비와 함께 기술개발주체들의 마인드 전작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지적재산권관리 전담부서의 강화

최근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하면서 관리해야 할 지적재산권의 증가 및 고도화 및 영업비밀 등의 정보자산의 증가 및 첨단 신지적재산권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관리 전담부서의 강화 및 효율성 추구는 매우 시

급하다. 그러나, 국내의 약 6만여 개 제조업체 중에 특허전담부서를 두는 회사 수는 '92년 1월말 현재 700여개로 국내기업의 관심이 미약 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겠으나 1993년 11월 현재 조사표본기업 143개사의 72%가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나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인식이 제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67%)이 4인 이하의 요원으로 구성된 기업내의 출원 업무의 행정적 지원에 그치는 극히 소극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본부장을 최고 경영진으로 하여 제안제도에 의한 試製品에 대해 생산개시여부, 수출대상국의 선택 등의 최종 타당성을 지적재산권 본부장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권리저촉시 적은 로얄티로 라이선스를 맺고 있다.

또한 이들 지적재산권들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반관리와 정보유통의 최적의 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관리 전담조직을 강화하되 일반관리와 정보유통관리의 연계관리를 그 핵심요체로 삼아 양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계관리에는 고도의 기법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법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전담요원을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적재산의 일반관리와 정보유통관리 등을 연관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특히, 영업비밀 등 무형의 그리고 고도의 첨단기술 관련 지적재산의 관리는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의 특성상 이를 각 사업부나 사업장에서 따로 따로 관리하기보다는 이를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관리부서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조직 편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직속 기구하에 예속시켜 지위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지적재산권 각 창출부서내의 기획부서나 연구개발부서내의 관리부서와의 연계성 제고가 중요하다

지적재산관리는 어느 업무보다도 전문성 축적이 요구되므로 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사이동을 삼가하여 당해 요원이 전문적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차원의 인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불필요한 순환근무 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다른 부서의 간부나 경영층의 훈련을 위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때에는 이들 대상요원들을 직무제안 발명관리 위원회의 요원으로 위촉하면 그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최고경영자의 일급 참모부서로서 기술운영지원부의 지적재산권전담부서가 총괄하되 각 사업부문내에 현실적으로 기획조정기능을 가진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각 기획부서내에 지적재산관리부서를 두어 가급적이면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특히기술정보 등 관련 정보 유통체계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보아 지적재산관리부서는 연구개발부서내에 설치하여 기업의 기술발전에 지적재산권 관리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능률적인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4. 기술관리와 지적재산 관리의 융합화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적재산권관리의 방향성은 기술관리와 지적재산권관리의 융합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하에 지적재산권관리체제의 발전 방향을 단계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최종 단계에 도달하여 기술관리와 지적재산권관리가 융합화 되고, 기술관리의 요체로서 지적재산권관리가 작용하여 사내제안제도나 직무발명의 결과에 의해 기술이 개발되며, 이 신기술에 의한 제품의 생산여부, 생산라인의 확충여부 등의 최종 타당성을 지적재산권 본부장이 최종 의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정해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지적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권리저촉 시 적은 로열티로 라이선스를 맺는 단계로 발전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관리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폭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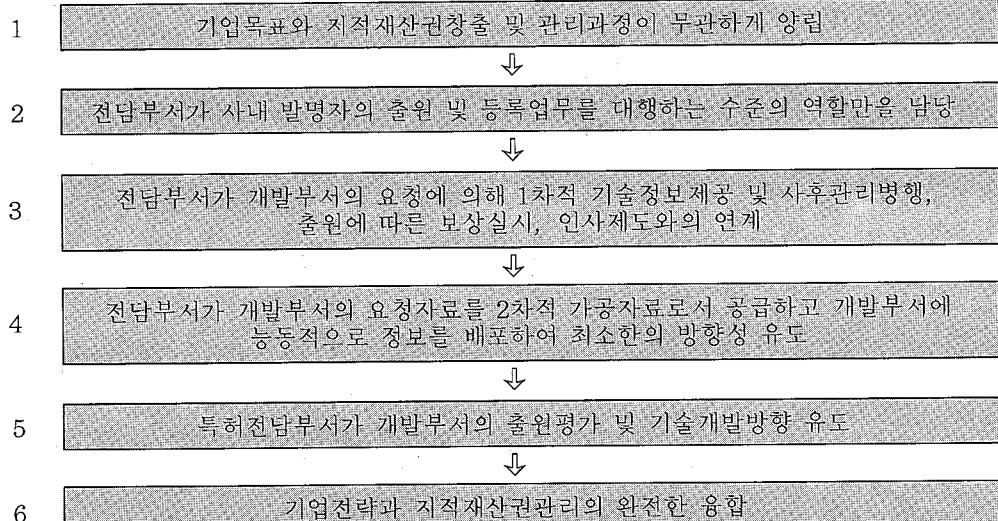
21세기는 흔히 新產業時代로 불린다. 新產業時代의 대표적 특징은 형체를 갖는 제품중심에서 無形의 지식·정보·서비스중심으로 그 산업대상이 옮겨가는 산업의 서비스化이다.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知的財產이 국제교역의 주 대상이 된다.

교역할 지적재산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술의 획득자체가 어렵다. 신지적재산권 분야의 기술은 그 어느 것 보다 철저히 보호되어 있고 기술이전도 어렵다. 더구나 기업내에 영업비밀로 秘藏하려는 경향이 더욱

<그림 2> 지적재산 관리모형의 발전단계

<단계>

<업무 내용>



커지면서 기술의 실체 조차 파악이 어렵다.

知的財産權보호·강화추세는 知的財産權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옮겨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상호의존도를 높여 세계 단일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재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의 조화는 긴급한 시안이 되었고, 知的財産權보호의 국제적 규격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이 문제를 UN의 WIPO(세계知的財産權기구)를 통하여 해결하기란 요원하므로 미국은 UR협정부터 知的財産權보호문제를 GATT의場으로 끌어들인 것이며 그 결과 UR/TRIPs 협정이 타결되었다.

知的財産權보호추세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해 우리나라의 불리 유리를 기능하는 것은 그 강화정도에 따라 그리고 산업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미 開途國들에 의해 우리의 知的財産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기 시작할 정도로 기술수준이 높아진 부문도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첨단기술확보를 對선진국 기술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간적 기술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知的財産이 지배할, 정확히 말하면 신지적재산권이 창궐할 21세기의 新產業時代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준비를 계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UR/TRIPs협상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관행과의 상충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부응하는 체제를 하루 속히 갖추어야 하며, 소프트 경제시대의 흐름에서 주도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知的財産의 확보를 위해 소프트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력의 새로운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력과 법적 대응력, 즉 법적 경쟁력을 구비하는 것도 소홀히 해

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력-정보력-법적 경쟁력의 세가지 부문의 강화와 상호 조율은 지적재산권관리능력의 핵심이다.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는 총체적 지적재산권전략이며, 기업 차원에서는 全社的 지적재산권관리전략인 것이다.

【참고문헌】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신교 역질서, 1994. 7.
- 2) 宋永植, 李相呈, 黃宗煥, 知的所有權法, 育法社, 1994.
- 3) 朴東炫, 신지적재산권 보호의 동향과 대응, 科學技術政策管理研究所, 1992.
- 4) 법무부, UR협상의 법적 고찰(1993).
- 5)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Finding a Balance, 1992(Washington).
- 6) Messag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ransmitting the Uruguay Round Trade Agreements, Texts of Agreements Implementing Bill,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Required Supporting Statements, September 27, 1994.
- 7) Jaeger, Melvin F., Trade Secret Law, Vol I, Clark Boardman Co. Ltd (May 1993).
- 8) Bainbridge, David, Software Copyright Law, Pitman Professional Publishing, 1992.
- 9) LeBlanc, R. E., et al, U.S. Patent

Litigation and Strategy, JETRO,
Tokyo, 1992

【주】

- 1) 1. Computer programs, whether in source or object code, shall be protected as literary works under the Berne Convention(1971).
2. Compilations of data or other material, whether in machine readable or other form, which by reason of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ir contents constitute intellectual creations shall be protected as such. Such protection, which shall not extend to the data or material itself,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copyright subsisting in the data or material itself.
- 2)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법상의 특별법적인 성격
- 3) IPIC 제2조 (i), (ii), (iii)
- 4) IPIC 제6조 제1항
- 5) UR/TRIPs 제37조
- 6) 1. In the course of ensuring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s provided in
2. Natural and legal persons shall have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information lawfully within their control being disclosed to

3. Members, when requiring, as a condition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pharmaceutical or of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which utilize new
- 7)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 8) patents shall be available to any inventions, whether products or processe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patents shall be available and patents rights enjoyable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the place of inventi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whether products are imported or locally produced.